예 산 총 칙

2019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63,197,315	13,895,919
일반회계	425,346,461	12,760,394
특별회계	37,850,854	1,135,526
기타특별회계	37,850,854	1,135,526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35,549,915	1,066,497
천사섬분재공원운영관리특별회계	85,000	2,550
주택사업특별회계	13,000	390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963,489	28,905
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50,100	1,503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1,189,350	35,681

제 2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1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5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 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.